

# 질 | 의 | 회 | 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박 천 일

## I.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 1. 지원부서의 사업구조화



#### 질 의

- 총무과, 법무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등 지원부서도 정책사업, 단위사업화 해야 하는지 ?



#### 회 신

- 사업예산제도는 사업부서 뿐 아니라 지원부서의 재정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재정 사업)도 포함함
- 다만, 지원부서의 정책사업, 단위사업은 사업부서보다 덜 복잡하여 자치단체 간 사업구조화가 유사할 수 있을 것임

### 2. 국비, 시 · 도비가 포함된 세부사업의 구분



#### 질 의

- 국비, 시 · 도비와 군비가 섞여 있는 세부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보조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 신

- 자체사업은 순수하게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며, 국비, 시 · 도비와 군비가 섞여 있는 세부사업은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으로 봄



### 3. 분권교부세의 사업 구분



#### 질 의

- 분권교부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는지, “보조사업”으로 구분하는지



#### 회 신

-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기초자치단체(시·군)로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함
-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분권교부세를 교부(시·도분)후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원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보조재원 세부사업(시·도비보조사업)으로 설정함

### 4. 세부사업 개념



#### 질 의

- 세부사업이란



#### 회 신

- 세부사업은 사업별 예산구조에 포함되는 사업단위 중 예산서(부속서류를 포함)에 나타나는 최하위 계층의 사업단위로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매년 새로이 편성하는 최소단위의 사업임

### 5. 사업구조화단계에서 재정투용자심사 대상



#### 질 의

- 정책, 단위, 세부사업중 재정 투용자심사의 대상은



#### 회 신

- 세부사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세부사업을 심사 단위로 선정함



- 단위사업 하부의 세부사업이 전반적으로 심사 대상일 경우 단위사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위사업을 심사 단위로 선정할 수 있음
- 정책사업 하부의 단위사업이 전반적으로 심사 대상일 경우 정책사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책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6. 행정운영경비의 분야·부문

### 질 의

- 행정운영경비의 분야·부문 결정 방법은

### 회 신

-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은 일반적으로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분야·부문을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기타’ 분야로 설정함
- 그러나 이들 경비의 운영 방법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바, 각 부서별로 편성·집행하고 이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정책사업으로 분야·부문을 결정해야 함

## 7. 통계목의 내부관리

### 질 의

- 통계목을 내부관리 한다고 하는데, 내부관리란 무슨 의미인지

### 회 신

- 사업예산서에는 조직-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만이 나타남
- 예전 품목예산제도하에서의 세목인 통계목은 집행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통계목적으로 사용됨



## 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1. 토지보상비 50%이상 증가시 재심 여부



#### 질 의

- 투·융자심사 규칙에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동 심사지침 9쪽 하단의 [단, 토지보상비가 당초 투융자심사기준 50% 이상 증가시는 재심사]에 해당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당초심사금액 대비 50%이상 늘어난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하고, 50%미만 늘어난 사업이라도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계획 수립시 단가산정 착오, 사업추진 기간 중 물가 변동, 토지보상비 증가 또는 사업규모 변동없이 여건 변동에 의한 공종이 증가되어 사업비가 50%미만 증액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2. 부지매입시 투융자심사 재심 여부?



#### 질 의

- 2002년에 투자심사 승인 후, 사업부지만 매입하고 사업을 보류하였다가, 이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함
- 문제는 투자심사 후 3년동안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 부지매입시점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재심사를 안받아도 되는지
  - 아니면, 부지매입은 사업시행으로 보지 않고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회 신

- 3년 동안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투자사업의 주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역계약, 토지보상 등의 부지매입 관련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3. 하천점용허가 받은 사업의 투용자심사 대상여부

#### 질 의

- 2006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제 외대상 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법(행안부), 하천법(국토해양부)에 의한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사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바,
- 하천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업은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사업비는 20억원 정도임

#### 회 신

- 제외대상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행안부) 및 하천법(국토해양부)에 의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하천정비사업만 투자심사 제외 대상임

## III. 예산의 편성

### 1. 국토관리청 시행사업의 지방비 부담

#### 질 의

-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제3호선 확포장공사의 일환으로 ○○군 관내에 설치한 암거박스를 철거하고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액 지방비를 투자할 수 있는지

#### 회 신

- 도로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의 규정에서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국도 제3호선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확포장공사 및 동 국도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해야 할 것임



## 2. 수입대체경비 수입절차



### 질 의

- 수입대체경비 운용요령과 ○○시 수입증지조례상 세입절차가 상이할 경우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 운용요령의 수입절차에 있어서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세입예산액이 달할 때까지 매월 말 현재의 예탁금을 익월 5일까지 세입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일결산 후 다음날까지 납부하라는 의견이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 수입대체경비운용요령에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3. 특별회계의 예산 재배정



### 질 의

- ○○사업단에서 ○○특별회계설치조례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의거 ○○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를 준용하여 특별회계의 예산을 출장소, 읍·면·동에 재배정할 수 있는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위임 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기타특별회계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4. 임차계약 체결의 채무부담행위 여부



###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시설을 민간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 임대료인 사용료는 3년 이후부터 20년간 지급키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는 시기는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로써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에 미리 지방의회 예산으로 의결을 받아야 함

## V.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을지연습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

 질의

- 기간제 근로자에게 을지연습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고용하는 자이므로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을지연습기간중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의 고용계약,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2. 위원회 서면심의시 참석수당 지급 가능여부

 질의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기간 1주일)후 심의서를 정 구 의안을 확정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자체의견

- 수당은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어떤 안건에 대한 의안제출을 회의에서 구두로 하



든, 서면으로 하든 위원회 의안심의에 대한 민간인 실비변상금으로 생각되어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 신

-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이므로 서면심의시에는 지급이 불가함
- 다만, 심사내용에 따라 심사수당 등은 지급이 가능할 것임

**3.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급 가능여부**

 질 의

- 기관장이 수행 공무원과 함께 관용차를 이용하여 관외 출장 시에는 별도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때 관용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신

-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시 “국가(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때 관용차량이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및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행안부 훈령)”에 의거 일반운영비로 편성, 집행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4.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집행범위**

 질 의

-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당일 점심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59호)에서 정

하고 있는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민간인인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급식제공은 불가하며,

-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급식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야 함

## 5. 위원회가 참석 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수당 지급

### 질의

- ○○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에서는 참석위원에 대하여서만 ○○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과 실비(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참고인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고인에 대한 참석수당과 실비변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위원회에서 참석 요청한 참고인을 위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신

-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행안부 훈령 제204호)에 의거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 및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하신 참고인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지만 조례 등에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6. 급량비 현금지출

### 질의

- 급식시 수행, 작업 장소 주변에 카드결제 가능한 식당이 없거나 카드사용이 가능한 식당까지의 거리가 멀어 업무수행상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시간의 업무수행 등을 인정하여 특정직원에 한해 특근매식비를 현금 지급해 왔으나 현금지급은 불가하다는 관리관청의 지적이 있어,
- 향후 상기 업무자의 특근매식비의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Q&amp;A



## 회신

- 특근매식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8호)  
IV-3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절차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며 또한 신용카드가 불가한 지역이나 식당의 경우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하며,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함

## 7. 직원능력개발비를 직접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직원능력개발비는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 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보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관내에 사설어학원이 없어 학원수강을 하려면 장시간 이동(차량으로 약 편도 1시간 소요)하여 인근 시로 나가야 하므로 사실상 학원등록은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청소속 원어민강사”, “사설어학원 강사” 또는 “관내 거주 외국인” 중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와 협약체결 후 직접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하는데 가능한지



## 회신

- 공무원 능력개발비는 소속지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 수강학원과 과목의 선택 등은 해당 자치단체가 경비의 성격에 부합되게 운영하되 필요한 사항은 회계관련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자치단체장이 강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사료의 지급의무는 원칙상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직원능력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치단체에게는 강사료의 지급의무가 없게 되고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 받은 당해 공무원이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설령 직원능력개발비를 재원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직원능력개발비가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 8.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질의

- 지방의원 보수체계 개편 이후에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

- '06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제3호에서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신설함에 따라 발생비용의 변상보전 차원에서 지급되어 온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는 바
-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자문·심의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시 수당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임
-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능 행사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 지방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행한 위원 활동은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의정비의 액수가 기준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의 수준에서 결정 된다면 위원회 참석에 대해 실비 변상 차원의 수당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9. 월액여비 지급 후 여비지출



### 질의

- 월액여비를 받고 있는데 15일이 넘지 않으면 감액 받고, 15일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비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 공공근로사업 부대비에 편성된 여비로 15일 출장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여비 지출을 할 수 있는지



### 회신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대상부서와





-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선 해당 자치단체 예산부서와 협의하기 바라며
- 시설부대비의 집행기준은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 감독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 또한, 월액여비로 집행하고 있는 업무를 15일의 출장 일수가 넘었다고 하여 부대비로 별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10. 업무추진비의 지출 및 정보공개 방법



### 질 의

-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세부 사항과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시기 · 방법 등을 정하는 가칭 『업무추진비 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 제정청구를 준비 중임
-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제정시 위법 또는 집행권 침해로 월권에 해당되는 지와 조례제정 가능성, 타당성, 필요성 여부 및 기타 참고사항



### 회 신

- 우선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되 제정내용이 관련법령 및 관련 상급기관의 조례 등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 조례 제정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 조례내용 중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정보공개법 및 기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자치단체 공개조례 등과의 상충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최근 소송을 통하여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조례내용 중 지출과 관련하여는 자치단체의 제반예산지출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 그 절차와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으며
  - 이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회계처리의 전국적인 통일기준의 운영과 회계질서 유지 및 회계책임을 명확화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 특히, 업무추진비의 건전한 집행과 낭비억제를 위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서 집행방법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업무추진비 지출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회계의 절차와 지출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11. 휴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질 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간담회, 협의회 등의 목적으로 휴일날 지출이 가능한 지





## 회 신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및 직책 수행 등의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임
-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상기 범위내의 공적인 직무수행활동에 따라 휴일에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집행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지방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금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 공적인 용도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조사 지출의 범위



## 질 의

- 내부직원외의 관할 지역내의 여러 인사들의 경조사에도 지출이 가능한 지



## 회 신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작비로 사용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경비이며, 동 경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의 기준은 지방예산이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금으로 무엇보다도 공적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됨(사적금지 원칙)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 경비로 공적인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경비의 집행대상이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사료되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결과 집행내용은 회계증빙서류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집행자의 책임임

### 13. 업무추진비로 축하 화환·화분을 보낼 수 있는지 ?



## 질 의

- <국무총리지시 제1999-13호>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의하면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유관기관(지역학교 및 공공기관포함) 및 단체의 장 경조사, 이취임시 또는 작품전시회 등에 축화 화화·화분을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 회신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공적인 용도로 직책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면 집행이 가능하다 사료됨.
- 다만, 지방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금인 만큼 무엇보다 공적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4.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지출가능 여부



## 질의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내부직원 경조사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지



## 회신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작비로 내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보다 동 경비로 집행함이 적절하다 사료됨
- 다만,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면 내부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정원가 산업무추진비로도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에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아낄 목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개인 직위의 명의로 경조사비를 집행함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됨

## 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대상사업



## 질의

- 의사운영추진, 시정주요업무추진, 도시교통업무추진 등 열거한 여러 가지 사업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성격에 해당하는 지



## 회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확정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용도가 다른 경비에 비해 포괄적인 점을 감안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고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액을 제시(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예산의 집행은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기준과 각종 회계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예산집행의 결과는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활동과 지방의회의 결산과 감사를 통해 적정여부가 확인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 따라서 단순한 사업 명칭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경비를 집행한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 16. 시책추진업무비로 기관내 직원에게 현금지급



### 질 의

-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매월 각각 1백만원씩 현금으로 부서별 직원들에게 업무별 격려 형식으로 2~30만원씩 지급하려고 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8호)에서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부 소속구성원에게도 집행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소속 공무원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17. 외빈초청, 선박임차료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 질 의

-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외빈에게 해상투어를 제공하는 계획수립중 투어회사로부터 크루즈에 소요되는 선박임차비(유류비 포함)을 부담하라는 통지를 받았음.





- ① 이 행사에 따른 선박임차료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 ② 선박임차료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할시 금액 제한은 없는지



### 회 신

- 외자유치 목적으로 초정된 외빈에 대한 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금액에 별도 제한은 없음.
  - 다만, 접대성 경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50만원 이상 집행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 등을 증비서류에 반드시 기재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18. 직원회식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질 의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각종 행사 종료후 또는 각종 시책업무 추진 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회식이 가능한지



### 회 신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써,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각종행사 종료후 또는 각종 시책업무 추진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직원 회식비로는 집행이 가능함

## 19.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집행



### 질 의

-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경비로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집행이 가능한지





## 회신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직원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이 가능한 사항임

## 20. 하부조직이 없는 과장(科長)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 질의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하부조직이 없는 과장(科長)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100 천원) 지급가능 여부



## 회신

-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하부조직이 있는 기관장과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상 보조 기관(課長이상)을 대상으로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하는 것임

## 21. 공로연수자의 업무추진비 지급



## 질의

-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은



## 회신

-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각각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 되는 경비 및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써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 경비의 성격상 당해 직책 또는 특수분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다만, 월중 공로 연수를 실시하였다면 월정액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22. 정원변동시 업무추진비 예산운용



### 질 의

- 예산편성이후 다음년도에 부서별로 공무원 정원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정원수에 따라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예산편성된대로 집행하여도 무방한지
-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인구수에 따라 예산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예산편성된대로 집행하여도 무방한지



### 회 신

- 부서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적용기준 시점을 전년도 10.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순기상의 불가피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직제상의 변동이 있어 정원변경이 있으면 추경시 조정된 정원으로 운영이 가능함
-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상기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할 사항임

## 23. 대기발령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 질 의

- 대기발령(파견근무를 갔다가 원소속으로 복귀해서 인사발령이전까지 보직이 없는 4급 이상 과장)자에 대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한지



### 회 신

-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므로 대기발령 등으로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24. 외국 파견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와 통상 관련업무 등을 지원하기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파견근무) 제1항에 의거 외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재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직급보조비를 병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하여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해외연수 및 외국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직무 수행의 연속으로 보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임

## 25.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대상

 질의

- 읍·면사무소의 직제개편으로 세무업무가 총무업무에 편입되어 1명의 세무담당 직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 바, 총무담당에게도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주는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읍·면사무소의 총무담당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동사무소의 주무담당(구 사무장)도 세무업무담당을 관장(결재)하고 있는 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 당해 자치단체의 읍·면·동 기능전환 또는 직제 개편에 따라 세무업무가 총무 업무에 편입되어 별도의 소속 직원이 전담 처리하고 있다면, 동 경비가 관련 업무의 처리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적 성격이며, 총무담당(또는 사무장)은 읍·면·동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6. 임용취소 기간 중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질의

-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임용결격 사유로 인하여 임용이 취소된 자가 다시 지방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임용취소에 취소를 받아 복직하였는데 임용취소 기간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방호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Q&amp;A



## 회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방호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임
- 공무원이 근무 중에 임용취소 등의 사유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성격의 특수업무수행활동비(방호활동비)는 지급할 수 없음

## 27. 전담부서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대상



## 질의

- 군은 해사채취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연간 50억이상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해사채취관리 부서는 건설행정과의 건설행정팀에서 사무를 보고 있음
- 해사채취 관리부서(건설행정팀)의 사무인력을 세외 수입 부과·징수부서로 보아 세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지



## 회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범위를 “실과 단위”로 정한 것은 경비 지급범위를 최소화하고 동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간 경비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건설행정과의 기본업무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주업무로 하지 않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외수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에게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건설행정팀의 해사 채취 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없음

## 28. 징계처분 무효·취소자 및 정년·명예퇴직자 대민활동비 지급



## 질의

-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수당등을 소급 지급하며, 정년, 명예, 조기, 자진퇴직의 경우 퇴직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에 대민활동비도 소급, 전액지급 할 수 있는 지





## 회신

-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우리부 훈령 제158호)에서 정한 경비임
- 따라서, 징계처분 등으로 당해 특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동 경비를 소급 지급함은 불가하다 할 것이며, 퇴직에 의한 경우에도 당해업무를 수행한 기간만 일할 계산함이 타당할 것임

## 29. 직속기관 등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 질의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회계·계약담당공무원”의 대상이 “시·군·구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음. 직속기관인 사업소, 보건소, 의회 등에도 경리관 및 지출원이 있어 회계·계약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지



## 회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하여 재정정책팀-6966 ('07.10.26)호로 통지한 바 있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인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관직 공무원 중 경리관(분임·대리경리관 포함), 지출원(분임·대리지출원 포함)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 위 훈령에서 시도, 시군구 본청 이외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지급대상기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나 대민 활동비의 예와 같이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중인 점을 감안할 때,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용어의 적용범위는 지방 자치단체의 본청에 해당하며, 지방의회, 제1관서 등 기타 관서는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정하고 있음

## 30. 겸임업무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 질의

- ○군에는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회계계약업무는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른 업무도 겸임해서 보고 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지



- ②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업무전담공무원외에 담당 및 과장까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신

- 질의①에 대하여
  -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②에 대하여
  -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계장 및 과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31. 의정활동홍보비의 예산편성



### 질의

- ① 지방신문의 지면을 통한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사항(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홍보할 경우 홍보비 예산은 어느 과목에 편성을 해야 하며,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의회 관련 신문보도내용에 대한 사례금이 아닌, 홍보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지방신문사에 게재 의뢰한 경우의 계재비(홍보비)를 뜻함]
- ② 지방유선방송사에서 본회의 장면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녹화하여 유선방송으로 방송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홍보비(방송료)를 예산편성하여 유선방송사에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목에 계상해야 하는지
- ③ 예산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는 집행이 가능한지



### 회신

- 질의①과 ③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와 광고료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함
  - 그러나, 자치단체 또는 의회가 홍보자료를 작성 지방신문사에 게재 의뢰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고나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동경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차원의 공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질의②에 대하여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활동을 녹화하여 유선방송으로 방송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 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단체협의체 부담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동 경비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없음

### 32. 의정활동 실황중계료의 예산편성



#### 질의

- 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케이블TV를 이용하여 실황방송을 할 경우 중계료를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예산에 편성·집행할 수 있는지
- ② ①항으로 편성·집행이 불가할 경우 넓은 의미의 의정활동으로 간주하여 의회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에서 집행가능한지



#### 회신

■ 질의①에 대하여

- TV·신문·잡지 등을 통해 지방행정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공고료 및 광고료는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로 계상가능한 바 케이블TV를 이용한 의정활동 실황 방송을 지방행정 홍보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실황중계의 필요성, 홍보수단으로서의 효용성, 케이블TV의 시청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중계료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홍보활동은 낭비성 예산 지출억제 차원에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②에 대하여

- 자치단체의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비목에 의거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홍보활동과 관련한 경비를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이외의 다른 비목에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33.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관련 소송비용 지급가능 여부



#### 질의

-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의장(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지방의회(피신청인)를 상대로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및 불신임결의취소의 소를 재개하여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되어, 신청인이 다시 항고하



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가. 피신청인인 지방의회가 의회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측 모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 의회예산에 소송비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바 기 편성되어 있는 의정공통 경비나 집행부의 예비비로 소송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라.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계약의 경우 변호사수임료의 상한선 기준은 있는지 여부



### 회 신

- 의장 불신임관련 소송수행업무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의 공적인 문제라면, 피신청인 및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지방의회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의 예비비보다는 지방의회 예산(의정운영공통 경비 등)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리고,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는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34. 지방의회 의원 식비 지급방법



### 질 의

-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출석시 식비 지급에 있어 각 위원회에 1개의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 개인별로 카드를 지급하고 1년 단위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회 신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 이러한 경비이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별도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것은 회의비, 공청회 개최경비, 각종 행사시의 위로금·격려금 지원, 회의시 오·만찬, 다과제공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업무추진비 등의 신용카드 사용문제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자치단체 예산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의거 우리부에 “신용카드 발급·보관·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처분 요구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공적사용이외 사적 및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보관·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신용 카드 사용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으며, 동 지침에서 부서별로 1개 발급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개인별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동 경비의 공적 사용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못하며, 회기 중 의원의 개별적 식사대지급 등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식권을 발행지급하거나 의원 개인이 인근 식당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사 후 담당자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며, 또한 신용카드 대금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매월 단위로 정산토록 하고 있어 연1회 정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

### 35. 지방의회 소송비용의 집행방법



#### 질 의

- 지방의회의 불신임을 당한 전직 의회의장이 시의회를 피고로 의장불신임결의 무효확인소송과 호력정지결정 신청의 건(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시의회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는 경우 의정활동으로 보아 의회비내의 의정 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의 일반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해야 하는지



#### 회 신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포괄적 집행이 가능하며, 의회사무국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의회의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경우 집행 가능하며,
- 따라서, 동소송수행업무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의 공적인 문제로써 자치단체예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일반 운영비(의회사무국)중 어느 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 소송수행업무가 의정 활동내지 의사업무 중 어느 업무영역에 더욱 밀접한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동 사안이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보기에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의회사무국의 일반운영비에서의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사무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자치단체가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36.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집행



#### 질 의

-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업무로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해외출장에 동행 할 경우
- ○○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 중 “동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시의원의 해외출장여비를 집행하여 왔음
- 그러나, “200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는 “지방의원은 어떠한 이유에 서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의회비」에서만 집행한다”로 되어 있음
-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범위에 시의원이 포함되는지와 시의원에 대한 해외출장여비를 집행기관에 편성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08.2. 5)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의회비에서만 집행 하여야 하며,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시에도 지방의원은 「의회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37.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



#### 질 의

- 의장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은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에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지급할 수 있다면 대표인 위원장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결위원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개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 회신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비 이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별도로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것은 회의비, 공청회 개최경비, 각종 행사시의 위로금·격려금 지원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원활한 예산결산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1인당 연간 기준액 범위내에서 의정운영공통 경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장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예결위원 개개인에게 격려·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 3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질의

- 지방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목적 외로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며, 실례로 매년 연말이 되면 소속직원들이나 상임위원회소관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고액의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적인 의정 활동수행을 위한 경비의 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며, 물론 기관운영영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현금화한 형태로의 집행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해야 할 문제인지



## 회신

- 의장단활동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서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공적인 경비로 지출되어야 함
- 따라서, 이와 같은 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격려금, 사례금, 선물 등으로 지출할 수는 있으나 예산의 낭비억제와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은 경비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 39. 재해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 질 의

-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고 읍면장의 업무를 지원·보조하는 『준공무원』에 위치한 민간인 신분임. 집중호우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지원 협의 등을 마치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지원 가능한 보상과목은



#### 회 신

- 수해응급복구와 관련된 사고로 민간인재해보상금(302-02) 지원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간인재해보상금(302-02) :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지원대상 여부는 사고당시의 정황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자치단체에 설치된 보상위원회 등의 심의하여 보상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40. 기부·보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범위



#### 질 의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 동 조항에서 말하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범위는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자치 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기부·보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 할 것임

#### 41. 시외버스 적자노선 지원근거

##### 질 의

- ○○도의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조례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 조례(○○도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한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의 위법성 여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분권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이양됨에 따라 예산의 지원방식과 지원규모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
- 다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안임



## 42. 외국인 공동체 모임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 질 의

- 외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모임”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수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란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조금 지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원여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

## 43.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 질 의

- 마을회에서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사업,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에는 당연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이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할 사항임

#### 44. 보조금 이자발생액의 사용



##### 질 의

- 시가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협의체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자산 성격으로 보조한 50백만원의 은행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자체 운영비 성격으로 사용가능한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지원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도 보조시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목적 수행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할수 있을 것이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사용용도가 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별도 정해진 경우 이를 따라야 할 것임

#### 45. 민간자본보조금 지급에 대해



##### 질 의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7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로 되어 있음. 농가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급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경우 환급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목적에 맞다면 계획서에는 없는 다른 농자재를 구입하여도 되는지, 또한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어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비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면 대상자는 사업비를 정





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가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농가는 외상거래를 하게 됨.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기 전에 물품구입 대금을 농가가 자부담으로 먼저 지불하고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 후 먼저 지불한 물품구입대금을 보조금으로 정산 할 수 있는지



### 회 신

-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처리는 당해 년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지출과목에 '여입' 을 시켜야 하며, 과년도 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면 '잡수입' 으로 처리해야 함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 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 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기 전에 물품구입대금을 농가가 자부담으로 먼저 지불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46. 민간자본보조사업 부지에 대하여



### 질 의

- 우리 군에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창고설치를 추진중에 있음. 창고설치 부지가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임대차계약으로 부지를 빌려서 보조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음. 이 경우 부지를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고 장기 임대차계약으로 부지를 빌린 후 건축비에 대해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지



### 회 신

-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다만, 질의하신 경우처럼 보조금을 교부하여 건립할 창고시설의 부지가 교부대상 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립부지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 상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기타 중요사항은 교부조건 등에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47.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단체에 민간위탁금 지원가능여부

### 질 의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회 신

-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별도의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위탁시 반드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와같이,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은 제도의 취지, 지급대상 및 처리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고 해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48. 대학교 부설기관에 시민위탁교육 실시

### 질 의

- 평생학습법에 근거한 ○○시 평생학습 지원조례에 의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대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등)를 지원 할 수 있는지

### 회 신

- 평생교육법에 의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 민간위탁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대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49.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 질 의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범위에 예·체능 육성(예: 축구부, 악대부, 학창단 운영) 지원경비 등이 포함되는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 등을 감안할 때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에 경상비적 성격인 예·체능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50.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예산편성 산출근거



#### 질 의

- 2008년 예산편성시 건설공사 용역설계 예산(통계목)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 비에서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실시설계비를 산출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228쪽)에 있는 요율을 초과하는 요율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용역설계발주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배와 추가업무비용(각종 측량 등)을 계상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편성기준의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보다 턱없이 낮은 요율로 용역설계대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런 경우는 어떤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예산은 꼭 편성기준에 의해서만 산출하여야 하는지
- 용지매입을 하여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총사업비 15억원)을 추진하다보니 “시설 부대비는 당초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집행”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산출되는 금액(540만원)만 책정해 주고 부대비에서 지출해야하는 지적분할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는 약 1,2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부족한 지적분할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를 확보하는 방안은





## 회신

-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건설부문 요율, 건축부문 요율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시 참고하도록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수록한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실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51. 시설비목에서 사업위치 변경 집행



## 질의

- 2007년도 품목별 예산편성시에 ○○시 고속도로 IC출구에 경관조형 분수대 설치예산 4억원을 집행부 공무원과 시의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 후, 동 장소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전협의 또는 추경편성시 사업장 변경 등 아무런 사전 조치없이 장소를 ○○시 ○○동 신도시 ○○아파트 입구로 변경하여 경관조형 분수대를 설치한 사실이 있음  
상기와 같이 시설사업비를 임의로 장소와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만약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지



## 회신

-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동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경관조형분수대설치 사업은 ○○IC에 설치하도록 예산으로 정한 것이므로 설치장소의 변경은 지방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함

## 52. 자산취득비에서 자료실 도서 검색시스템 구입가능 한지



## 질의

-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에 자료실(도서 등)검색시스템구축과 분실방지시스템 구축의 사업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실방지시스템의 내역으로 보면 자산으로 물품 구입으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지만, 검색시스템은 용역성질이 있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지

-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계약법시행령을 보니 물품과 용역을 통합 발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색시스템도 자산취득비에서 입찰을 올릴 수 있는지



### 회 신

- 검색시스템의 구축이 자산취득 성격의 하드웨어에 동반해 시스템구축이라는 용역비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하드웨어 구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용역에 의한 시스템구축인 경우에는 용역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임

## 53. 출자의 정의와 운영 방법



### 질 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시 지방자치단체 직접 투자 가능 여부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할 경우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는 단체” 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공법인” 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 회 신

#### ○ 출자의 개념

- 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격을 지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재원을 부담하고 부담한 재원이 사라지지 않고 잔존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한 내용에 따라 이를 귀속받고 해산시에도 책임을 지는 등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개념적인 범주)
- 이러한 출자금은 자치단체가 주민이 납부한 세금 등 공금을 공익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자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 ○ 자치단체의 출자의 대상범위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있는 단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출자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한 공사와 공단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수도, 공업용수,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등 사업이 해당됨
-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처리 바람

#### 54. 회계간 전출시 정산 여부



##### 질의

- 지방재정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회계간거래(전출, 전입금)가 있을 경우 나중에 변제해야 하는지, 예를들면,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예산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다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변제해야 하는 사항인지



##### 회신

-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당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계간 전출입이 가능하며 전입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음

#### 55. 예탁금 편성



##### 질의

- 작년부터 악화된 구의 재정여건상 인건비의 예산편성이 어려워 올해 당초예산에 직원 인건비를 85%만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하려고 하니 인건비를 100% 편성할 재원이 모자라서 특별회계에서 차입코자 함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의 시설비에 편





성되어 있는 사업중 계획이 취소된 사업비에 대하여 금회 추경시 시설비를 감하고 예탁비로의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일 안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예탁금과 예수금이 아닌 전출금과 전입금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 전출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출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 자치단체에서 전출금 또는 예탁금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면 됨

## 56. 예비비에서 토지매입 가능 여부



### 질 의

-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추가소요액이 발생되어 2008년 제1회 추경예산(‘08.6월)에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을 ‘08년 6월에 조기착공 하여야 하는 관계로, 어렵게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부지매입을 위해 예비비에서 우선 매수코자 함
  - 위와 같은 경우 예비비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 예비비 지출제한의 내재적 제약중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에서 대규모 투자지출의 범위는 얼마를 말하는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 예비비에서 토지매입 가능 여부는 지방재정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예비비 지출제한의 내재적 제약중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에서 대규모 투자지출의 범위는 투용자 심사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군·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광역시·도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 IV. 예산의 변경 관리

### 1. 재전용 가능 여부



#### 질 의

- 전용된 건에 대하여 추가 또는 재전용이 가능한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인건비(총액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2. 전용 조례제정에 관하여



#### 질 의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시에도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전용 금액은 결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견제도 가능하도록 함
- 상위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써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단,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의 편성목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3. 시설비의 변경사용



#### 질 의

- 예산 변경사용의 제한을 보면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 회 신

- 예산 변경사용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제한 비목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목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나
- 편성목내 통계목은 법정과목이 아니므로 전용제한 비목이라 할지라도 세부사업이 같고 동일 편성목내 통계목간이라면 변경사용은 가능함

### 4. 이체, 전용예산의 집행잔액 처리



#### 질 의

- 회계연도 중 이체, 전용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시 결산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 조정이 가능한지



#### 회 신

- 이체의 경우는 예산액으로 관리되므로 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 조정이 가능하나 전용예산의 경우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므로 불용처리 하여야 함

### 5. 이월사업의 편성목 변경



#### 질 의

- 2007년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 명시이월 하였음. 2008년 집행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신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 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편성목간의 변경은 불가

## V. 기타 지방재정제도

### 1.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질의



### 질 의

- 1)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관광엑스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할 경우 동 엑스포발전기금을 결산 또는 정산하여 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편성 사용이 가능한지
- 2)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기금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관광 엑스포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지
- 3) '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한 후 기금을 조성하되, 기 조성된 엑스포발전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현재처럼 관광진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 회 신

- 1) 관광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있던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을 폐지하여 신설 기금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의 기금을 폐지할 경우 폐지 조례에 잉여기금은 관광진흥기금에 편입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함
- 2)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함
  - 만약 기금 상호간 유사한 기금이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라면 상기 법에 위반 하여 설치할 수 없음
- 3)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면 개정을 통하여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현재처럼 관광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개정시 기금설립 목적과 재원조성 및 사업 내용 등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 질의

-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의회 의결 후 확정되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는지



#### 회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용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회 심의결과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데, 이 때 자치단체장 결재시에도 계획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에도 수정될 수 있음

### 3.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에 따른 출연금 처리 방법



####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 평가항목의 출연금을 금고지정약정서에 명시한 경우 출연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회신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한 기금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예산에 편성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40호)의 3.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금고지정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사항과 같이 금고약정서상에 출연금이 명시된 경우는 약정서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잡수입)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VI. 지방예산 용어 해설

### ◇ 과징금(課徵金)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임(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범칙금,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환경보전법상 부과금 등)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과징금으로 흡수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 ◇ 과태료(過怠料)

행정별의 일종으로서 형별인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별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별(金錢罰)로서 질서별, 집행별, 징계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그중 질서별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는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것으로 공·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음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음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음

① 질서별로서의 과태료 ② 징계별로서의 과태료 ③ 집행별로서의 과태료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 ◇ 기획예산(企劃豫算, planning-programing budgeting)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의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예산임.(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며, 과학적 분석기법을 동원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가용재원의 규모가 감안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 ◇ 보전재원(補填財源)

보전재원이란 차입금의 원리상환을 위하여 보전하는 재원으로서 국내 차입금상환과 해외차입금 상환으로 구분함. 국내차입금상환은 지방공기업, 예금은행, 기타 국내차 입금원리상환이 있으며 해외차입금 상환으로 차관, 기타 해외채무원금상환이 있음

####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예산제도임.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 제도이며, 사업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 사정(査定)

예산안의 사정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 「조정(調整)」이라 하고, 예산주관국장이 담당하는 부분을 「심사(審查)」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을 「사정(査定)」이라 한 것임

####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收入의 直接使用 禁止의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됨. 다만,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 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

#### ◇ 예비타당성조사제도(豫備妥當性調查制度)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음

#### ◇ 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제약(議會의豫算審議權의制弱)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는 국회(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즉 국회(지방의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적극적 수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예산증액의 폐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회(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 재정규율(財政規律, fiscal rules)

재정규율이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범을 말함

구체적으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종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목표를 수치로 정한 다음 이를 법제화하고, 준수하는 의회와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의 의미함

◇ 총액계상예산(總額計上豫算)

총액계상예산(lump-sum budgeting)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 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국가의 경우 2008년도 총액계상예산 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총 5개 부처에 총 8개의 사업이 편성됨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음

◇ 통합지출관(統合支出官)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복식부기의 통합재무제표 산출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한 통합지출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현재까지 아직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없음)

◇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會計年度 開始前 支出)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이라 함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즉 1월 1일 이전에 당해연도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말함

세출의 지출은 당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